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77
----------	------

2017. 8. 31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8월 28일, 김인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7.8.31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인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중 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”만 규정되어 있어,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리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.
-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의 조성·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된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생태계조성 업무도 수행하며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임.

- 이에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추가함(안 제21조제1항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“SH공사”)의 사업범위 중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리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28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- 이 개정조례안은 SH공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“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” 업무에 “산업단지 관리업무”를 추가함으로써 업무범위를 확대·조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- 현행법상 산업단지 관리업무¹⁾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

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고, 그밖에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“지방공사”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²⁾되어 있음(붙임 1 참조).

- 그러나, 현행 조례는 공사의 사업범위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및 재생사업만을 규정하면서 포괄적인 위탁규정만을 두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사업) 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	제21조(사업) 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

- 참고로, 해외 선진도시의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살펴보면 뉴욕,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도시 내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IT, 바이오 및 R&D 기업 등을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도시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한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, 뉴욕의 경우 뉴욕경제개발공사(NYCEDC)가 산업임대 공간과 벤처기업, 소규모 업체 등을 지원하는 공공산업단지 및 혁신

1) 관계법령상 ‘산업단지 관리업무’란, 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·집행’, ‘공공시설,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계획 수립 및 설치·운영’, ‘산업용지의 매각·임대’, ‘공장·지식산업센터 설치’ 등을 의미함.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 및 영 제5조)
2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 및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

공간을 개발·운영 중이며, 싱가포르의 경우 주룽도시공사(JTC)가 첨단복합산업단지의 계획 및 개발, 운영을 총괄하면서 개발이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.

- 서울시 역시 첨단산업단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, 현재 서울시내 산업단지 중 SH공사가 조성 중인 마곡산업단지의 전략적 개발과 잠재력 극대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,

SH공사가 조성 중인 강동 일반산업단지(엔지니어링복합단지)와 과거 1970년대 민간공업단지로 개발된 온수산업단지의 재생사업에 SH공사 참여를 검토 중에 있음.

- 향후 SH공사에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위탁·수행하게 될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부터 관리·재생단계까지 연계시킴으로써 산업단지의 ‘생애주기별 종합관리’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(붙임 2 참조), 강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·지원과 효율적인 산업단지 분양·기업유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이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분야의 경우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.

※ 참고로 ‘산업단지 관리업무’가 신설됨에 따른 비용추계결과 산업단지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공공지원시설 등의 위탁관리비, 지원사업비, 운영비 등으로 연평균 41억 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심사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
재생사업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산업단지 관리업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사업) ① (생략) 1. ~ 6. (생략) 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8. ~ 20. (생략) ② (생략)	제21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8. ~ 2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